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라, 현행 규정상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,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,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,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(안 제4조의2, 제6조, 제7조)

-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신설
- 지방의회 동의내용에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포함

나.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(안 제10조의2, 제11조의2)

-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
-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

다. 사후 관리·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

(안 제12조의2, 제19조의2)

-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
-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(지방자치법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9. 2. 1. ~ 2. 21.) 결과, 제출받은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

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5. 위원이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

인정될 경우

6.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재계약)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성과평가)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개별 법령 및 조례·규칙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<u>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</u> 2. <u>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</u> 3. <u>경제적 효율성</u> 4. <u>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</u> 5. <u>성과 측정의 용이성</u> 6. <u>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</u> 7. <u>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/u>
<p>제6조(위탁계획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8. (생략) 	<p>제6조(위탁계획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</u>
<p>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</p>	<p>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<u>군수는 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.</u></p> <p><u>제10조의2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p><u>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u>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</u> <u>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</u> <u>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 <u>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</u> <u>5. 위원이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</u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6. <u>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<u>제12조의2(재계약) ①</u> <u>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</u> <u>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9조의2(성과평가) ①</u> <u>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</u> <u>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 재정의 지출 및 수입에 대한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자치행정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